

#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립대 조직 일부를 개편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AI · SW융합교육원 신설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첨단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 마련

### 나.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 폐지(안 제7조제1항제5호)

- 사회공헌 기능을 ‘기획처’ 산하 ‘대외협력과’로 이관하여 대외협력 기능과의 연계성 및 실행력 강화

### 다. 체육관 명칭을 스포츠건강진흥원으로 변경(안 제7조제1항제7호)

- 건강·체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칭 변경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(학교의 조직)

###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5. 8. 29. ~ 9. 1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최병찬 (☎ 2133-673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3항 후단 중 “「교육공무원법 임용령」 제12조의2”를 “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2조의2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AI·SW융합교육원

7. 스포츠건강진흥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총장) ① · ② (생 략)	제3조의3(총장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----- ----- ----- 「교육공 무원법 임용령」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 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 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	제7조(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)
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.	①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AI · SW융합교육원
1. ~ 4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5. 글로벌서울사회공헌단	7. 스포츠건강진흥원
6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7. 체육관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8. ~ 12. (생 략)	
② ~ ④ (생 략)	

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시립대 조직개편 사항으로,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이 없어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행정6급 최병찬(☎ 2133-6739)